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

◇ 제정 이유

- 소방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,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◇ 주요내용

가. 목적(제1조)

-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나. 적용범위(제2조)

- 소방청과 「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

다. 정책홍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예산 집행·관리(제3조~제5조)

- 소방청 정책홍보 종합계획(예산 집행계획 포함) 작성 시기 및 내용에 관한 사항

라. 정책홍보협의회 구성·운영(제6조)

- 정책홍보 방향·시기·절차 등에 대한 검토·조정을 위해 소방청 정책홍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며, 그 운영에 관한 사항

마. 언론 및 온라인 홍보, 민·관 협력 홍보(제7조~제12조)

-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정책에 대한 홍보의 범위, 절차, 방식 등에 관한 사항

바. 정책탐방 및 정책고객관리(제13조~제14조)

- 올바른 정책정보 전달을 위한 언론인 대상 정책탐방 및 이해관계자 대상 정책고객서비스(PCRM) 제공에 관한 사항

사. 성과 및 자료관리(제15조~제16조)

- 주요 정책홍보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·평가 및 관련 자료의 수집·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

아. 홍보 교육 및 지원(제17조)

-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청 및 소속기관, 시·도 소방본부 직원 대상 홍보 교육·지원 등 책무